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업무보고

2015. 12.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업무 보고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 ‘하나고 특혜의혹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비리와 교원 채용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 ◆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의 학교폭력, 예산편성과 집행, 법인 이사회 운영 등 법인 및 소속 학교의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학비리 척결 및 학교 정상화에 기여

2. 감사기간 : 2015. 9. 14. ~ 2015. 10. 7.(기간 중 15일 실지감사)

3. 감사반 : 감사 3팀 사무관 이종현 외 총11명

4. 감사대상 : 학교법인 하나학원, 하나고등학교

II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 합 계 | | | 징계 (인원) | 시정(금액) | | | | 경고 (인원) | 주의 (인원) | 기관 징고등 (기관) | 통보 | 고발 및 수사 (인원) |
|-----|-------------|-------------|------------|----------------|---------------|---------------|--------------|------------|------------|-------------------|----------|-----------------------|
| 총건수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금액 | | 소계 | 회수 | 반환 | 세입조치 | | | | | |
| 24 | 21 | 155,317 | 6 (15) | 7 (155,317) | 5 (89,360) | 1 (64,320) | 1 (1,635) | 7 (19) | 1 (13) | 1 (3) | 2 (2) | 7 (21) |

※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경고 처분함

※ 현지조치 사항 1건

※ (인원)은 건별 누적으로 인하여 중복 계산된 것임

주요 지적 및 처분 현황

○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수익자 부담경비 (기숙사비) 목적외사용 (시설충당 적립금 등), 이사장의 부적절한 학생행정 개입 등 총 24건

○ 파면 등 징계 : 신입학 및 전·편입 전형 성적 관리 부당 처리 등 7명

※ 신입학 및 전·편입 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5명), 교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2명), 국제영어캠프 회계업무 부당처리(3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2명), 수익자 부담경비 (기숙사비)목적 외 사용(1명), 비공개 (개인정보)자료 부당 공개(2명)

☞ 총 15명인 사유 :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건별로 중복 징계 요구되어 누적된 인원 수임

※ 임원승인취소(1명) : 향후 고발 결과 및 별도 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 고발 및 수사 의뢰 : 신입학 및 전·편입학생 입학 전형자 성적 조작 의혹 등 7건(9명)

※ 신입학 관련 성적 조작 의혹(7명), 교원 채용 업무 부당처리(3명), 국제 영어 캠프 회계업무 부당처리(4명), 법인회계 예산 목적외 부당 집행(1명), 교원 임면 허위 보고(2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1명), 부당 수의계약(3명)

☞ 총 21명인 사유 : 이사장, 교장, 전)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건별로 중복 고발되어 누적된 인원 수임

○ 재정상 조치 : 155,317,112원

※ 회수 : 89,360,860원, 반환 : 64,320,370원, 세입조치 : 1,635,882원

2. 분야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① 신입학 및 전·편입 전형 성적 관리 부당 처리

1. 신입학 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 2011학년도에는 지원자 28명에게 0.10점~1.70을, 2012학년도에는 지원자 25명에게 0.10점~4.93점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모든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평가기준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만 5점을 일괄 부여하였음

- 2013학년도에의 경우,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지원자 21명에게 0.14점~12.20점을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2단계 심층 면접전형에서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지원자 13명에게는 - 4.25점~-0.02점을 부여하여 불합격시키고, 지원자 16명에게는 합격 커트라인에 맞춰 0.05점~2.45점을 부여하여 합격자로 선정하였음

2. 전·편입학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시된 12회의 전·편입 전형 중 10회의 전·편입 전형 모집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전·편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하였음
- 2011년 3월 전·편입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8명 중 1명에게만 전·편입학전형소위원회에서 1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켰고, 2011년 8월 전·편입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7명 중 1명에게만 전·편입학전형소위원회에서 1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전·편입 전형을 실시하였음
- 성적조작 등의 정황에 근거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음

②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알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자치 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나,
-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2012. 4월 경 교사에게 위 학교폭력사안을 보고 받고도 최초 피해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한 같은 해 3월 이후로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아이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하였음
- 자치위원장의 업무방해로 판단되어 “고발”하였음

③ 교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1.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 과정 부적정

- 2010~2014학년도까지 총 10명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이사장, 교장)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정교사로 전환하였으며, 기간제교사를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교사로 전환하였으면서도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처럼 정교사 공개채용 인원에 포함하여 교육청에 허위 보고함

2. 신규교원 공개채용 업무 소홀

- 2010~2014학년도 신규교원 공개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채용인원을 ‘과목별 0명’이라고만 표기하여 정확한 채용 인원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공개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함
-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음

④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학교시설(기숙사포함)인력관리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그룹과의 거래를 통하여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학교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입찰 시 비용 증가가 예상 된다”는 사유로 ◇◇◇◇(주)과 계속하여 총 98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 외에도 기숙사세탁물처리용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학교 위탁급식, 주방기구 설치 계약 등 총 139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부당수의계약으로 학교예산에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하였음

5 이사장의 부적절한 학사행정 개입

- 법인 이사장은 교직원의 지도·감독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속 교사가 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강좌에 참여토록 지시하였고,
- 학교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교직원 입장에 대하여 신문광고 보도를 제안하고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는데도 ‘교직원 일동’으로 긴급하게 광고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학사행정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6 H국제영어캠프 회계업무 부당 처리

1.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2014년~2015년 방학 기간 중 ‘영어캠프 사무위탁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였는데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업체와 3회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영어캠프 예산 부당 집행

-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사무위탁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개발용역’을 체결(49,500천원)하고, ‘교육프로그램개발용역’ 내용에 포함된 ‘워크북 제작’은 별도로 발주(1,783천원) 하였으며, ‘사무위탁용역 계약’에 포함된 ‘영어캠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 또한 타 업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비용을 지급(4,194천원)하는 등 3건의 중복계약을 통하여 총 55,477천원의 학교 예산에 손실을 입힘
- 영어캠프 사무위탁용역 업체인 △△△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미리 총 8,000천 원을 지급한 후 제출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및 사용내역)를 확인한 결과, 이미 지출 완료된 영수증, 개인용도로 사용한 영수증 및 사용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는 등 총 4,115천원의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음

7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목적 외 사용

- 2013. 3. 13.에 서울시교육청에 기숙사 감가상각 충당금 적립 및 사용 계획과 2012학년도 적립금 88,278천원을 보고하였으나 적립 가능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반려하고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비로 적립한 감가상각 충당금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했어야 하는데도 감가상각 충당금 적립을 유지하였고, 2013학년도에도 수익자부담 교육비인 기숙사비에서 감가상각 충당금 64,320천원을 추가 적립하였음
- 그 적립금에서 2014~2015학년도에 기숙사 방충망 공사, 침대 매트리스 구입, 기숙사 천장형 에어컨 세척비, 학생 공용 테이블 등으로 적립금 관리 계좌에서 계 92,922천원을 직접 집행하였고, 현재 적립금 집행 잔액 65,801천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 현황

(단위 : 원, 명)

| 연번 | 제 목 | 처분 요구 | | | | 비고 |
|----|---------------------------------------|-------|----------|---------------------------------|-----------|----|
| | | 처분종류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금액 | 고발 등 | |
| ① | 이사장의 부적절한 학사행정 개입 | 통보 | 별도처분예정 | | 고발 (1) | |
| ② | 법인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 시정 | 경 고 2 | 회수 5,070,000 | | |
| ③ |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사용 부적정 | 통보 | 별도처분예정 | | | |
| ④ | 신입학 및 전편입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 징계 | 중징계 1 | | 고발 (7) | |
| | | | 경징계 4 | | | |
| ⑤ |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알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 경고 | 경 고 1 | | 고발 (1) | |
| ⑥ | 교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 징계 | 중징계 2 | | 고발 (3) | |
| | | | 경 고 1 | | 고발 (2) | |
| ⑦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시정 | 경 고 2 | | | |
| | | | 주 의 2 | | | |
| ⑧ | 교원 근무시간 운영 부적정 | 시정 | 기관주의 | | | |
| ⑨ | 하나국제영어캠프 회계업무 부당 처리 | 징계 | 중징계 2 | 회수 65,129,960 | 고발 (4)) | |
| | | | 경징계 1 | | | |
| ⑩ |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징계 | 중징계 1 | | 수사 (3) | |
| | | | 경징계 1 | | | |
| | | | 경 고 1 | | | |
| ⑪ | 학교매점 위탁 운영 임대료 관리 부적정 | 경고 | 경 고 2 | | 세무서 통보 | |
| ⑫ | 시설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 경고 | 경 고 1 | | | |
| ⑬ | 시설공사비 과다계상 | 시정 | 경 고 1 | 회수 5,581,000 | | |
| ⑭ | 각종 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 관련 업무 소홀 | 시정 | 주 의 2 | 회수 4,630,000 | | |
| ⑮ | 준공검사 업무처리 소홀(하자보증서 징구 부적정, 준공검사원 미등록) | 주의 | 주 의 2 | | | |
| ⑯ |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목적외사용 (시설충당 적립금 등) | 징계 | 경징계 1 | 반환 64,320,370 세입조치 1,407,722 | | |
| | | | 경 고 1 | | | |
| ⑰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시정 | 기관경고 | 회수 8,949,900 | | |
| | | | 경 고 2 | | | |

| 연도 | 제 목 | 처분 요구 | | | | 비고 |
|--------|--------------------------------|--------------------------------------|--|--|-------------------------------|----|
| | | 처분 종류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금액 | 고발 등 | |
| | | | 주 의 1 | | | |
| ⑱ | 수익금 직접 사용(학교회계 미편입) 부적정 | 시정 | 경 고 1 주 의 2 | 세입조치 155,160 ²⁾ (USD 138.92) | | |
| ⑲ |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집행 부적정 | 경고 | 경 고 2 주 의 1 | | | |
| ⑳ |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운영 부적정 | 주의 | 주 의 3 | | | |
| ㉑ | 비공개(개인정보) 자료 무단 공개 | 징계 | 경징계 2 | | | |
| ㉒ | 개인정보 동의 절차 미준수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 경고 | 기관경고 | | | |
| ㉓ |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규정 위반 | 경고 | 경 고 1 | | | |
| ㉔ |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학생 정보 제공 | 경고 | 경 고 1 | | | |
| 합 계 | | 징계 6 시정 7 경고 7 주의 2 통보 2 | 중 징계 6 경 징계 9 경 고 19 주 의 13 기관경고 2 기관주의 1 | 회수 89,360,860 반환 64,320,370 세입조치 1,635,882 합계 155,317,112 | 고발 6 (18명) 수사 1 (3명) | |

1) 업체 1명 포함

2) 2015.11.05.(목) 기준으로 실제 처리일자 및 환전수수료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10원단위 미만은 절사로 표시)